

정원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06. 12. 27
개정	2008. 06. 10
개정	2009. 01. 30
개정	2010. 01. 06
개정	2010. 12. 22
개정	2011. 09. 19
개정	2012. 02. 24
개정	2013. 05. 02
개정	2014. 03. 13
개정	2014. 08. 21
개정	2015. 06. 15
개정	2017. 12. 19
개정	2019. 02. 28
개정	2022. 03. 02
개정	2023. 10. 11
개정	2025. 04. 18
개정	2025. 05. 30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정원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정원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조직 및 정원규정 등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정원

제3조(정원) 직원의 정원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직급 및 직위)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별표 2”와 같으며, 직종은 일반직 및 기술관리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8.6.10., 2009.1.30., 2010.1.6., 2010.12.22., 2011.9.19., 2012.2.24., 2014.8.21., 2015.6.15., 2017.12.19., 2019.2.28., 2022.3.2., 2023.10.11., 2025.4.18., 2025.5.30.>

정 원 표

구분	계	정책 협력 실	감 사 실	기 획 조 정 부	경 영 지 원 부	안 전 시 설 부	홍 보 기 획 부	공 연 기 획 부	전 시 기 획 부	축 제 기 획 부	아 트 리 움 운 영 부	무 대 예 술 부	생 활 문 화 기 획 부	예 술 창 작 지 원 부	문 화 예 술 교 육 부
계	119	3	2	6	12	10	7	10	4	4	10	26	10	5	10
대표이사	1				1										
2급·3급 (상당)	5	1	1	1				1					1		
4급	12			1	1	1	1	1	1	1	1	1	1	1	1
5급	23	1		1	2	2	2	2	1	1	2	4	2	1	2
6급	33		1	1	4	3	2	3	1	1	3	8	2	1	3
7급	45	1		2	4	4	2	3	1	1	4	13	4	2	4

※ 1) <삭제>

2) 공무원 정원은 「공무원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별표 2〕

<개정 2009.1.30., 2010.1.6., 2010.12.22., 2012.2.24., 2013.5.2., 2014.3.13., 2017.1
2.19., 2019.2.28., 2023.10.11., 2025.4.18.>

직급 및 직위

직급		직책	직위
일반직	기술관리직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2급 · 3급		본부장	실장 · 본부장
3급 · 4급 · 5급		부장	실장 · 부장
4급	4급		부장
5급	5급		차장
6급	6급		과장
7급	7급		대리 · 사원

※ 7급 중 대리는 승진 소요연수(3년) 경과자에 대하여 경력평정 후 부여

